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6. 1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5. 22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0. 5. 26.

다. 상정일자: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6.17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청소행정과장 이주현】

가. 제안이유

구민의 책무인 청결유지를 위한 세부기준을 보완하고,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운영방식 변경 등 청소환경 변화에 대해 현실에 맞게 개정·정비하여 환경보전과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폐소형가전제품 수수료 면제 적용(안 제2조 제7호 별표 1)
- 대형폐기물 세부 품목 추가 및 일부 규격 기준 변경(안 제2조제1호 별표 1)
-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 변경에 따른 재활용품 세부 배출요령 반영(안 제2조제8호 별표 2)

- 구민의 책무 관련 청결유지 조치 세부기준을 보완하여 미이행시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(안 제10조의2)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방식의 톤당단가제 운영으로 과거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이용한 종량제봉투 제작비 부과·징수 규정 삭제(안 제30조)
-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의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규정 마련(안 제35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환경 변화에 맞게 조례 세부 기준을 보완, 정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 - (안 제2조제7호 별표1)에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폐소형가전제품 수수료 면제 적용하는 내용임.
 - (안 제2조제1호 별표1) 대형폐기물 세부 품목 추가 및 일부 규격 기준 변경하는 내용임
 - (안 제2조제8호 별표 2)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 변경에 따른 재활용품 세부 배출요령 반영하는 내용임.
 - (안 제10조의2)구민의 책무 관련 청결유지 조치 세부기준을 보완하여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하는 내용임.
 - (안 제30조)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방식의 톤당단가제 운영으로 과거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이용한 종량제봉투 제작비 부과·징수 규정 삭제하는 내용임.
 - (안 제35조)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의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개정조례안은 청소환경 변화에 대해 환경부 분리배출 지침 변경 사항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안 제35조에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의 종량제 봉투수수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19가 보여주듯이 재난이란 범위가 넓어진 만큼 지원대상이 필요로 할 때 지원이 되어야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사항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, 대형폐기물 세부 품목 추가 및 일부 규격 기준 변경하는 내용은 업체의 수거비용을 현실화 한 것은 배출된 폐기물의 빠른 수거를 유도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에 도움이 될 것임.

○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 변경에 따른 재활용품 세부 배출요령 (제2조제8호 관련) 조항에 관한 내용을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일상화 되도록 하여 처리비용 절약과 더불어 자원재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